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 2021.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12. 10. ~ 12. 30.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 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1년 3월 16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p>	<p><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김하나 (☎ 3153-9204)